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92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수진・이기헌・정태호

한정애 • 민형배 • 서영교

박홍배 · 송옥주 · 이연희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 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 조 등).
-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제3조제12호 등).
-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제3호 본문・제4호 본문・제5호 본문・제6호 본문・제7호 본문 및 제10호 다목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며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 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 14. 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제4조제1항제1호 중 "알선"을 "유인ㆍ권유ㆍ알선"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 · 권유 · 알선"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알선"을 "유인 · 권유 · 알선"으로 한다.

제47조 중 "알선"을 "유인 · 권유 · 알선"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 알선"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 선"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2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	
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	
수, 매매 또는 매매의 <u>알선</u> 을	유인·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권유·알선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3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	
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 수수, 운반, 사	<u>유인·권유·알선</u>
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	
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 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4.	
	 유인·권유·알선
	<u> </u>
5.	
	 O Ol - I O Ol Al
	<u>유인·권유·알선</u>
6.	
	유인 • 권유 • 알선

-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 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 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 거나 매매를 <u>알선하는</u> 행 위
- 11. (생략)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

	·
7	
	<u>유인·권유·알선</u>
ブ	h.·나. (현행과 같음)
じ	}
	유인·권유·알
	<u>선하는</u>

- 11. (현행과 같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u>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u> 제시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매하며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 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4. 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저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u>알선</u>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 4. (생략)
 - ② ~ ⑤ (생 략)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저 ~ ④ (생 략)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생략)
- 2. 매매·매매의 <u>알선</u>·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3. 4. (생략)
- ⑥ (생략)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생 저 략)

에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1
<u>유인·권유</u>
<u>• 알선</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2 <u>유인 · 권유 · 알</u>
<u>선</u>
3.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ll 42조(폐기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
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다.

- 1. 2. (생략)
-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 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소지, 소 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 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 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8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 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 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 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u>유인 • 권유 • 알선</u>-----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 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 수출입 • 매매 •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권유·알선-----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 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생략)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 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u>알선</u>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 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9. ~ 14.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u>,-</u>
 5. (현행과 같음) 6	
유인·권유·알선	
7	
유인 • 권유 • 알선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60조(벌칙) ①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	2
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 매매의 <u>알선</u> , 수	유인 • 권
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u>유·알선</u>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	
방전을 발급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1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	4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다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	
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 한 자	<u>유인·권유·알선</u>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	5

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소 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 12. (생 략)
- ②·③ (생 략)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 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u>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u> <u>한 자</u>(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 서는 제외한다)
- ②・③ (생 략)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u>유인·권유·알선</u> -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u>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u>죄를 범한 자</u>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가증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
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
한 자
② <u>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u>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
7호의 죄를 범한 자

③ (현행과 같음)